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제 11 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 365 조 및 당사 정관 제 23 조에 의거하여 제 11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4 년 03 월 28 일 (목) 오전 09 시 00 분
2. 장소 : 시흥상공회의소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3 층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보고

《보고 사항》

- 1) 감사보고
- 2) 영업보고
-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부의 안건》

제 1 호 의안: 제 11 기(2023 년 1 월 1 일 ~ 2023 년 12 월 31 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정관일부 개정의 건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3-1 호 의안 : 사내이사 심진형 선임의 건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의 관계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추천인	채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심진형	1985.03.07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	이사회	없음	없음	없음

- 후보자 주된 직업/세부 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등

성명	주된 직업	주요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심진형	대학교수/경영인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 박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헨타엔알바이오랩 이사	해당사항없음

제 3-2 호 의안 : 사외이사 이주형 선임의 건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의 관계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추천인	채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이주형	1971.11.02	해당	해당사항없음	해당	이사회	없음	없음	없음

- 후보자 주된 직업/세부 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등

성명	주된 직업	주요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이주형	변호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헌법무법인 한길 변호사	해당사항없음

제 4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 4-1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내이사 심진형 선임의 건

제 4-2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권현영 선임의 건

제 4-3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주형 선임의 건

의안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의 관계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추천인	채납사실 여부	부살기업임원 재직 여부	법정상 결격사유 유무
제4-1호	심진형	1985.03.07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	이사회	없음	없음	없음
제4-2호	권현영	1968-07	사외이사 후보	해당사항없음	해당	이사회	없음	없음	없음
제4-3호	이주형	1971.11.02	사외이사 후보	해당사항없음	해당	이사회	없음	없음	없음

- 후보자 주된 직업/세부 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

의안	성명	주된 직업	주요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제4-1호	심진형	대학교수/경영인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 박사 한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한티앤알바이오랩 이사	해당사항없음
제4-2호	권현영	대학교수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한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부원장/사이버보안정책센터장) 한티앤알바이오랩 사외이사	해당사항없음
제4-2호	이주형	변호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한법무법인 한길 변호사	해당사항없음

제 5 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4명(1명)	4명(2명)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0억원	10억원

제 6 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 542 조 4 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tnrbiofab.com),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 368 조의 4)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관리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4년 3월 18일 9시 ~ 2024년 3월 27일 17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인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 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8. 기타사항

당사는 주주총회시 일체의 경비 및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주총회장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4년 03월 13일

주식회사 티앤알바이오팜

대표이사 윤 원 수 (직인생략)

[별첨1]

※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개정이유
제2조 (목적) 1~25 (기재생략) 26.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2조 (목적) 1~25 (기재생략) 26. 의약외품 제조 및 도소매업 27.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사업목적추가
제5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60,000,000주로 한다.	제5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 한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 증가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의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류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및 연구개발, 제휴 등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이하 기재생략)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의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류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및 연구개발, 제휴 등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이하 기재생략)	발행한도 증가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의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류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이하 기재생략)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의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류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이하 기재생략)	발행한도 증가
제 20 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기재생략)	제20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기재생략)	발행한도 증가
제 21 조(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기재생략)	제21조(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기재생략)	발행한도 증가
제40조(이사의 의무) ① ~ ③ (기재생략)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의 의무) ① ~ ③ (기재생략)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개정
제42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③,⑤ 기재생략	제42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에 통지하여 소집한다 ④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③,⑤ 기재생략)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개정
제44조(이사회 의사록) ① (기재생략)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4 조(이사회 의사록) ① (기재생략)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6장 감사 제49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의 감사를 둔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신설

현행	개정	개정이유
	<p>제 49 조(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45 조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p> <p>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p> <p>③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결의할 수 있다.</p> <p>④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p> <p>⑤ 제 3 항·제 4 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신설)	<p>제49조의2(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p> <p>① 제49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p>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개정
제50조(감사의 선임·해임) (기재생략)	<p>제50조(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p> <p>①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p>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이전 및 개정
제51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p>제51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p> <p>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p> <p>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p> <p>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p> <p>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이전 및 개정
제52조(감사의 직무 등)	<p>제52조(감사록)</p> <p>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이관 및 내용 신설

현행	개정	개정이유
<p>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제53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제53조 삭제</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이관</p>
<p>제54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p>	<p>제54조 삭제</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문이관</p>
<p>제56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1)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2)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보고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필수로 첨부하여야 함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56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1)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2)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보고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필수로 첨부하여야 함.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1.)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개정</p>
<p>제57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제57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개정</p>
<p>부칙 (기재생략)</p>	<p>부칙 이 정관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7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제15조, 제16조 및 제22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0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4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개정</p>

주식회사 티엔알바이오팜 귀중

위 입 장

본인은 2024년 03월 28일 개최되는 주식회사 티엔알바이오팜 제 11기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또한 속회 및 연회로 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다 음 -

- 1. 소유 주식수 : 주
- 2. 의결권 있는 주식수 : 주
- 3. 위임할 주식수 : 주

4.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의결권 찬반 여부

의안	주주총회 목적사항		찬성	반대
제 1 호 의안	제 11 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제 2-1 호 의안	사업목적 추가		
	제 2-2 호 의안	발행주식 총수 변경		
	제 2-3 호 의안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첨가부사채, 교환사채 발행한도 증가		
	제 2-4 호 의안	감사위원회 설치 및 관련 정관 정비의 건		
제 3 호 의안	제 3-1 호 의안	심진형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 3-2 호 의안	이주형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 4 호 의안	제 4-1 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내이사 심진형 선임의 건		
	제 4-2 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권현영 선임의 건		
	제 4-3 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주형 선임의 건		
제 5 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6 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5.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

-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4 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 목	지 시 내 용
내 용	

2024 년 월 일

대리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_____

위임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_____

주식회사 티앤알바이오팜 귀중

주주총회 참석장

일 시 : 2024 년 03 월 28 일 (목) 오전 9 시 00 분

장 소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3 층 회의실

Tel : 031)431-3344

(2023 년 12 월 31 일 현재)

주주명	주식수